

[별표 14의2] <신설 2014.1.28>

과징금의 부과기준 (제46조의2제1항 관련)

과징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
$$\text{과징금 금액} = \text{조업정지일수} \times \text{1일당 부과금액(300만원)} \times \text{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}$$

비고: 1.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.

2.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로 다음 표와 같다.

종 류	부과계수
제1종 사업장	2.0
제2종 사업장	1.5
제3종 사업장	1.0
제4종 사업장	0.7
제5종 사업장	0.4